

2 (第13回-水資源管理第5次)

<p>理解하셔서 原案 通過를 해 주시면 '96年度부터 漢江保全諮問委員會를 내실 있게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.</p> <p>아무쪼록 原案 通過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閔相今 所長님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專門委員은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張奉萬 專門委員 張奉萬입니다.</p>	<p>1988.12.31. 조례 제2237호로 제정되었음.</p> <p>○ 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는 한강의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, 진행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한강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었음.</p> <p>나. 개정안 조항별 분석</p>										
<p>(報告)</p> <p>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I. 제안이유</p> <p>가.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서</p> <p>(1) 위원회 기능 계속성</p> <p>(2) 위원회 소속감 및 안정감이 결여되고</p> <p>(3) 위원에 대한 재위촉 절차가 번잡하여 임기연장이 필요하고</p> <p>나. 매 분기별 1회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소집을 위원회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으로 개정하고</p> <p>다. 한강관리사업소 직제변경으로 위원회 운영요원 직위를 한강관리사업소 현재 직제와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.</p> <p>II. 주요골자</p> <p>가. 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(안 제4조)</p> <p>나. 위원회 정기회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변경함(안 제7조제2항)</p> <p>다. 위원회 운영요원을 현사업소 직제와 일치시키고자 간사는 관리과장에서 관리부장으로, 서기는 서무계장에서 총무과장으로, 분과위원회 서기는 관련계장에서 관련과장으로 변경함(안 제11조제2항)</p> <p>III. 참고사항 및 관계법규</p> <p>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</p> <p>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</p> <p>다. 합 의 : 필요없음.</p> <p>IV. 검토의견</p> <p>가. 개 요</p> <p>○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는</p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조 항</th> <th>분 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4조 (위원의 임기)</td> <td>임기는 1년을 2년으로 한다.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, 소속감 양양, 위원 재위촉과 선임의 번잡성 해소를 위하여 타당함.</td> </tr> <tr> <td>제7조제2항 (회의)</td> <td>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년 1회로 개정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는 개정안은</td> </tr> <tr> <td>제11조제2항 (간사 및 서기)</td> <td>타당함.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“관리과장”을 “관리부장”으로 하고, 서기는 “서무계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는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현직제의 직위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함.</td> </tr> <tr> <td>부 칙</td> <td>개정안에서 ① 시행일 ② 자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한 개정안은 타당함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다. 종합의견</p> <p>○ 원안, 심사가결이 타당함.</p> <p>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閔相今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이상 서울特別市漢江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漢江管理事業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.</p> <p>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와 漢江管理事業所長의 答辯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.</p>	조 항	분 석	제4조 (위원의 임기)	임기는 1년을 2년으로 한다.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, 소속감 양양, 위원 재위촉과 선임의 번잡성 해소를 위하여 타당함.	제7조제2항 (회의)	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년 1회로 개정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는 개정안은	제11조제2항 (간사 및 서기)	타당함.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“관리과장”을 “관리부장”으로 하고, 서기는 “서무계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는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현직제의 직위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함.	부 칙	개정안에서 ① 시행일 ② 자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한 개정안은 타당함.
조 항	분 석										
제4조 (위원의 임기)	임기는 1년을 2년으로 한다.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, 소속감 양양, 위원 재위촉과 선임의 번잡성 해소를 위하여 타당함.										
제7조제2항 (회의)	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년 1회로 개정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는 개정안은										
제11조제2항 (간사 및 서기)	타당함.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“관리과장”을 “관리부장”으로 하고, 서기는 “서무계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는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현직제의 직위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함.										
부 칙	개정안에서 ① 시행일 ② 자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한 개정안은 타당함.										